

대통령령 제 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4 제2호 다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 행위	행정처분 기준	
	1차 위반	2차 위반
다.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되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		
1) 법령 위반이 1건인 경우	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	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
2) 법령 위반이 2건 이상인 경우	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	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금 인상률 관련 위반행위 적용례) 별표4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등록금부터 적용한다.